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정 청구인 명부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입니다.”

인권은 교육과 민주주의의 주춧돌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둔 교육,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청구인 명부를 작성합니다.

번호	※ 서명요령 아래 굵은 선 안을 채워주세요.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2.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정자로 기재하거나 인장을 날인합니다. 3.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합니다.		
성명	서명(정자) 혹은 날인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번호	-	서명날짜	201 년 월 일
핸드폰/전화	이메일		

※ 연락처와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조례개정 상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본 서명운동에만 사용됩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 ♣ 학생을 존중하는 교육 || 학생 역시 존엄성과 권리의 주체임을 확인
- ♣ 폭력 없는 교육 || 체벌, 괴롭힘, 언어폭력, 성폭력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 ♣ 소통하고 참여하는 교육 || 학생의 의사존중/ 학교규정 제개정 참여 보장/ 자치활동 신장
- ♣ 차별 없는 교육 || 성, 장애, 가족형태, 경제적 지위, 성적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장애·다문화·아르바이트청소년·운동선수·성소수자·이주노동자 자녀 등 소수 학생의 권리 보호
- ♣ 개성과 사생활이 존중되는 교육 || 두발·복장 등을 통한 개성 실현/ 자의적 소지품 검사압수 금지/ 개인정보 보호
- ♣ 자발성의 교육 || 자율적 학습 보장/ 보충수업·야자 강제 금지/ 종교강요·서약강요 금지
- ♣ 돌봄의 교육 || 심, 안전, 건강, 안전한 먹을거리, 상담과 조력 등을 보장
- ♣ 인권을 상호존중하는 교육 || 인권교육 확대/ 학교·교육청의 책임 명시/ 학생권리구제기구 설치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모두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듭니다!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성명	홍 세 화	주민등록번호	47 [redacted]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 [redacted] (전화번호 : 010- [redacted])		
청구종류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제정 청구		
서명요청기간	2010년 10월 27일부터 2011년 4월 26일까지		
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9세 이상의 주민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0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redacted]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www.sturightnow.net

(156-090)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07-45 승지빌딩 8층 02-582-8884